

도이치 DWS 와인그로스 (Wine Growth) 실물투자신탁

2011.07.01 시행 -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변경내용

- 해외위탁운용 관련 내용 삭제 및 수정
- 환매금지형에서 개방형으로의 변경
- 자산운용회사보수, 판매회사보수 및 수탁회사보수 인하

1. 약관

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6-1조 (외국 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등의 위탁)	<p>①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176조와 법시행령 제 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제36조제1항의 투자대상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한함]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조사분석과 법 시행령 제30조제 5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단순매매주문 업무 등을 외국에 소재하는 자산운용회사(이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운용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p> <p>③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약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보수에서 자산운용회사와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협의한 금액으로 하며 자산운용회사보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p>	삭제
제6-2조 (해외 위탁자산운용회사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	<p>① 제6-1조에 따라 운용업무 등을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할 경우에는 덕스턴 자산운용(Duxton Asset Management Pte.Ltd.)으로 한다.</p> <p>②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삭제
제6-3조 (해외 보관대리인의 선정)	<p>수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6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2. 제 1 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3. 제 1 호와 제 2 호의 업무와 관련된다 고 수탁회사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행 	삭제
제18-1조(수익증권의 상장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p> <p>② 이 수익증권의 상장, 매매, 상장폐지 등에</p>	삭제

	<p>관한 사항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1조(수익증권의 환매)</p>	<p>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동안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p>	<p>①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⑤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증권에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에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⑥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2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p>	<p>해당사항 없음</p>	<p>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p>

		있다.
제24조(수익증권의 일부환매)	해당사항 없음	<p>①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제 1 항의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는 제 21 조 내지 제 23 조, 제 25 조 내지 제 27 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한다</p>
제25조(수익증권의 환매제한)	해당사항 없음	<p>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전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연기)	해당사항 없음	<p>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p>

		<p>각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 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3.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p>③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p> <p>④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p> <p>⑤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⑥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⑦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그 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p>
제27조(수익증권의 부분환매)	해당사항 없음	<p>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p> <p>③자산운용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p>

		<p>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 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p> <p>④자산운용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p> <p>⑤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p>
제40조(투자신탁보수)	<p>① ~ ② <생략></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8.0 3.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5</p> <p>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계약기간을 경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경과시점 이후부터의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을 적용한다.</p> <p>1.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 3.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25</p>	<p>① ~ ② <현행과 동일></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3.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5</p> <p>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계약기간을 경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경과시점 이후부터의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을 적용한다.</p> <p>1.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 3.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25</p>

2. 투자설명서

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환매금지형에서 개방형으로의 변경						
제1부 I. 투자신탁의 개요 3. 분류	실물간접투자기구, 단위형, 폐쇄형(환매금지형)	실물간접투자기구, 단위형, 개방형				
제1부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2. 환매	해당사항없음	[변경후 1 참고]				
제2부.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2. 환매 관련 유의사항	해당사항없음	[변경후 2 참고]				
변경내용 : 해외위탁운용 관련 내용 삭제 및 수정						
제1부 I. 투자신탁의 개요 4. 자산운용회사 - 해외자산위탁운용회사		덕스톤자산운용 (Duxton Asset Management Pte. Ltd) * 실물자산을 전체 매도함에 따라, 덕스톤 자산운용 (Duxton Asset Management Pte Limited) 과의 투자일임계약도 2011년 7월 1일자로 해지될 예정입니다.				
제1부 II. 투자정보 2. 주요투자전략	-	[문구추가] * 실물자산을 전체 매도함에 따라, 덕스톤 자산운용 (Duxton Asset Management Pte Limited) 과의 투자일임계약도 2011년 7월 1일자로 해지될 예정입니다.				
제1부 II. 투자정보 6. 운용전문인력		[해외위탁운용역 관련 내용 삭제]				
제2부.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4)	4) 투자 대상 실물자산의 종류 및 비중은 투자당시의 실물자산 가격 및 거래량, 기타 와인시장의 환경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와인 실물자산의 운용 업무는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덕스톤 자산운용 (Duxton Asset Management Pte Limited) 이 담당합니다.	4) 투자 대상 실물자산의 종류 및 비중은 투자당시의 실물자산 가격 및 거래량, 기타 와인시장의 환경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와인 실물자산의 운용 업무는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덕스톤 자산운용 (Duxton Asset Management Pte Limited)이 담당하였습니다. 단, 실물자산을 전체 매도함에 따라, 2011년 7월 1일자로 해당 투자일임계약도 해지될 예정입니다.				
변경내용 : 자산운용회사보수, 판매회사보수 및 수탁회사보수 인하						
제1부 III. 수수료·보수, 과세 2.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¹⁾	3.000%	매 3개월	자산운용회사 보수 ¹⁾	0.0100%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0.800%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0.0100%	매 3개월
	수탁회사 보수	0.060%	매 3개월	수탁회사 보수	0.0200%	매 3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5%	매 3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50%	매 3개월
	총보수 ²⁾	3.885%		총보수 ²⁾	0.0650%	
	기타비용 ³⁾	1.300%		기타비용 ³⁾	0.0112%	
	총 보수·비용 비율	5.185%		총 보수·비용 비율	0.0762%	
	주1) 자산운용회사 보수 가운데 해외위탁운용사					

	<p>가 지급되며, 해외위탁운용사는 지급받은 보수 내에서 와인자문사(FICOFI) 및 투자위원회 보수를 지급합니다.</p> <p>주2) 편입된 실물자산의 매각이 지연되어 최초의 신탁계약기간(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6개월간)을 경과한 경우, 자산운용회사 보수 및 판매회사 보수가 0%로 변경되어, 총보수는 0.085%로 하락합니다.</p> <p>주3) 기타비용은 실물자산의 보관비용, 보험료 등 실물자산과 관련된 비용 및 펀드의 거래소 상장에 따른 비용 등을 포함하며, 설정액 100억원에 대해 80% 실물자산에 투자한 경우의 추정비용으로서 실제비용은 시장상황 및 계약상황에 따라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비용: 와인자산의 연 0.75% 수준 - 보험료: 와인자산의 연 0.50% 수준 - 거래소 상장 등 비용: 펀드 순자산의 연 0.3% 수준 <p>[이하 생략]</p> <p><1,000만원 투자시 예상비용></p> <table border="1" data-bbox="320 1077 847 1290"> <thead> <tr> <th></th> <th>1년후</th> <th>2년후</th> <th>3년후</th> <th>3.5년후</th> </tr> </thead> <tbody> <tr> <td>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td> <td>633,962 원</td> <td>1,191,998 원</td> <td>1,777,935 원</td> <td>2,085,552 원</td> </tr> </tbody> </table> <p>[생략]</p>		1년후	2년후	3년후	3.5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33,962 원	1,191,998 원	1,777,935 원	2,085,552 원	<p>주 1) 자산운용회사 보수 가운데 해외위탁운용사가 지급되며, 해외위탁운용사는 지급받은 보수 내에서 와인자문사(FICOFI) 및 투자위원회 보수를 지급합니다. 단, 실물자산을 전체 매도함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는 해당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p> <p>주2) 편입된 실물자산의 매각이 지연되어 최초의 신탁계약기간(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6개월간)을 경과한 경우, 자산운용회사 보수 및 판매회사 보수가 0%로 변경되어, 총보수는 0.045%로 하락합니다.</p> <p>주3) 기타비용은 실물자산의 보관비용, 보험료 등 실물자산과 관련된 비용 및 펀드의 거래소 상장에 따른 비용 등을 포함하며, 설정액 100억원에 대해 80% 실물자산에 투자한 경우의 추정비용으로서 실제비용은 시장상황 및 계약상황에 따라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단, 실물자산을 전체 매도함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는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비용: 와인자산의 연 0.75% 수준 - 보험료: 와인자산의 연 0.50% 수준 - 거래소 상장 등 비용: 펀드 순자산의 연 0.3% 수준 <p>[이하 현행과 동일]</p> <p><1,000만원 투자시 예상비용></p> <table border="1" data-bbox="887 1205 1465 1335"> <thead> <tr> <th></th> <th>1년후</th> <th>2년후</th> <th>3년후</th> </tr> </thead> <tbody> <tr> <td>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td> <td>7,811 원</td> <td>105,125 원</td> <td>203,689 원</td> </tr> </tbody> </table> <p>[중략]</p> <p>*본 예상 비용은 2011년 7월 1일자로 인화된 보수를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p>		1년후	2년후	3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811 원	105,125 원	203,689 원
	1년후	2년후	3년후	3.5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33,962 원	1,191,998 원	1,777,935 원	2,085,552 원																
	1년후	2년후	3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811 원	105,125 원	203,689 원																	

기타 변경 사항		
제 1 부 I. 투자신탁의 개요 5. 최초설정일 및 연혁	2008. 5. 19.	2008. 5. 19. 최초설정 2011.07.01.폐쇄형(환매금지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
제 1 부 II. 투자정보 7. 투자실적		2011.06.12 기준 업데이트
제2부.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	* 다음에 기재된 투자전략에도 불구하고, 2011년 7월 1일 현재 기준, 모든 와인 자산이 매도 완료됨에 따라, 본 펀드는 콜(Call Loan) 등의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성자산에 투자되어 만기까지 운용됩니다.
제2부.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3. 투자대상		* 2011년 7월 1일 현재 기준, 모든 와인 자산이 매도 완료됨에 따라, 본 펀드는 콜(Call Loan) 등의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성자산에 투자되어 만기까지 운용됩니다.

제3부. 1.자산운용 회사 3.최근2개 사업년도의 요약 재무내용	2011.03.31 기준 업데이트
제3부. 1.자산운용 회사 5. 운용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2011.06.13 기준 업데이트

[변경후 1]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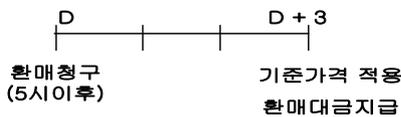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오후 17시 이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해당사항없음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변경후 2]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3)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